

#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7,104,802	15,813,144
일반회계	473,997,628	14,219,929
특별회계	53,107,174	1,593,215
공기업특별회계	37,012,199	1,110,36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671,096	680,13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341,103	430,233
기타특별회계	16,094,975	482,849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951,521	58,546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2,029	61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300,000	9,000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905,693	57,171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8,571,996	257,16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363,736	100,912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3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10,70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